

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의 졸업을 위한 이수학점 등의 관리

2011. 12. 12. 최초제정

2021. 09. 01. 부분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간호과의 수업연한이 4년제 과정으로 변경됨에 따른 졸업을 위한 이수학점 등의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수업연한) 간호과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.

제3조(제한연한)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않는다.

제4조(졸업) ①4학년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2항, 제3항의 졸업요건을 갖춘 사람은 졸업 자격을 부여하고 학사학위 증서를 수여한다.

②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규정된 기준에 따른다.<개정 2021.09.01.>

③졸업학점 중 교양교과 및 전공필수교과를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.

제5조(3년제 재학생의 4학년 교육과정 운영졸업) 현재 3년제 재학생의 4학년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“3년제 재학생의 4학년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지침”에 따른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